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9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김정호·서삼석·김철민

임종성 · 김경협 · 김윤덕

강훈식 · 신동근 · 김병욱

신정훈 · 임호선 · 윤준병

권칠승 · 윤후덕 · 김교흥

주철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 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재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됨에도,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 1항 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기한,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
	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전기사업
	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
	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기한,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u>로 정한다.</u>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제20조(과태료)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때
<u>1.</u> ~ <u>3.</u> (생 략)	<u>2.</u>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